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9. . . (제 회)	

국 민 건강 보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아동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산정특례 제외 등을 적용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본인부담 계산식을 환자와 의료인이 알기 쉽도록 입원기간에 따른 진료비 산정기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의 상한을 설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보험료 징수 등 업무 수행

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단 등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등 적용 규정 명시(안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제3호, 별표 3 제3호)
- 나.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추가(제45조의2)
- 다. 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7조의4)
- 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본인부담 계산식을 기준수가와 일당수가를 이용하여 입원 일수에 따른 산출식으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가목)
- 마.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 제3호하목)
- 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 4의3)
- 사.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

경할 수 있도록 감경 상한 설정(안 별표 5 제4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을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하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의2 중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을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와 법 제81조에 따른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하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정비율, 평균”을 “평균”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을 “상급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하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3년이”를 “6개월이”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 \text{질병군별 기준점수} + (\text{입원일수} - \text{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times \text{질병군별 일당점수} \} \times \text{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별표 3 제3호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제외)”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 「관세법」”

으로 하고, 같은 호 고목 및 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소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코목부터 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소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호목(중전의 조목)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과목을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에 관한 자료

노.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공탁법」에 따른 공탁 관련 자료

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회생, 파산 절차 관련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면책결정일, 당사자 등에 관한 자료 등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자료

오. 「가사소송법」에 따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관한 자료

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내역 등 산업재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 자료 및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자에 관한 자료
별표 5 제4호 본문 중 “금액을”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2호 가목 및 제3호 하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3호의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입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